

의안번호	2211290
의 퇴 인	강승규 의원
회 답 일	2025. 9. 12.
추 계 번 호	25F364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철강 추가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는 경우, 철강분야에 적용되는 R&D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7년 12억원, 2030년 14억원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53억원(연평균 1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7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 추가 (안 제10조제1항)	-12	-13	-13	-14	-53	-13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(연구·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철강 분야 추가 -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8개 분야에서 철강을 포함한 9개로 확대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 중 통과되어 2026년 귀속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며,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7~2030년간 발생
 - 2026년 귀속소득 및 투자액 등은 2027년에 신고됨에 따라 세수효과는 2027년부터 발생
 - 또한, 현행 국가전략기술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까지임을 감안하면 세수효과는 2027~2030년간 발생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
 - 개정안에 따라 현행 철강분야의 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·인력개발비(이하 'R&D') 및 투자에 적용되는 공제율이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공제율 수준으로 인상된다고 가정
 - 신성장·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다음과 같음
 - ※ 공제율(%): (현행) R&D 세액공제: 중소기업 20, 대기업 30
 - 통합투자세액공제: 중소기업 12, 중견기업 6, 대기업 3
 - (개정안) R&D 세액공제: 중소기업 30, 대기업 40
 - 통합투자세액공제: 중소기업 25, 중견 및 대기업 15
 - 2022~2024년간 철강산업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을 활용
 - 해당 기간중 철강산업내의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는 연평균 21억원 수준이며,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전액 일반 시설투자로 세액공제
 - 실적에 따라, 국가전략기술에 철강분야를 추가하더라도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의 공제액 변화와 중소기업의 공제액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가정
 - 2025년 철강분야 신성장·원천기술의 R&D 세액공제 증가율은 해당 공제의 총액 증가율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
 - 2025년 공제액 증가율: R&D 세액공제 40.2%
 - 향후 철강분야의 R&D 세액공제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지식재산생산물 투자 증감률 전망¹⁾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가정

- 향후 기업에 이익이 충분히 발생하여 확대되는 세액공제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며, 최저한세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음
- 동 추계는 세액공제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음
 - 국가전략기술에 철강분야가 추가될 경우, 해당 산업내 기업의 R&D 지출 및 투자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지만, 추계 시 이를 고려하지 않음

3. 상세 추계내역

(1) 제도 개요 및 조세지출 실적

- (제도 개요) 현행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규모별·기술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
 - 현행 기업이 신성장·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에 지출한 R&D 비용 및 투자액에 대하여 일반적인 R&D 비용이나 투자액 대비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

[표 1]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¹⁾ 비교

(단위: %)

	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	
				반도체 외	반도체
R&D 세액공제	중소기업	25	30~40	40~50	
	중견기업 ²⁾	8~20	20~35	30~45	
	대기업	최대 2	20~30	30~40	
통합투자세액공제	중소기업	10	12	25	30
	중견기업 ²⁾	5~7.5	6~9	15~20	20~25
	대기업	1	3	15	20

주: 1) 표의 공제율은 당기 R&D 비용 또는 당기 투자분 기준

2) 중견기업의 공제율 범위는 중소기업에서 전환된 이후 일정기간 동안 적용되는 우대공제율을 포함

1) 국회예산정책처, 「2025년 NABO 경제전망: 2024~2028」, 2024.10.

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현행 8개 분야에서 철강을 포함한 9개 분야로 확대
 - －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2025년 2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인공지능 및 미래형 운송수단이 추가되어 8개 분야가 되었음
 - ※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, 인공지능
 - (개정안) 상기 분야에 철강 분야 추가

□ (공제실적) 2022~2024년 철강협회에서 제공받은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법인세 실적은 다음과 같음

- R&D 세액공제의 경우, 신성장·원천기술에 대한 공제액이 대기업에 한정하여 발생
-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전액 일반 시설투자에서 발생

[표 3] 철강기업의 R&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(법인세): 2022~2024년 신고기준
(단위: 억원)

		R&D 세액공제			통합투자세액공제		
		중견기업	대기업	계	중견기업	대기업	계
2022 신고	일반	1	42	43	12	205	217
	신성장·원천기술	－	21	21	－	－	－
	국가전략기술	－	－	－	－	－	－
	계	1	63	64	12	205	217
2023 신고	일반	2	49	51	43	1,682	1,725
	신성장·원천기술	－	27	27	－	－	－
	국가전략기술	－	4	4	－	－	－
	계	1	81	82	43	1,682	1,725
2024 신고	일반	1	48	49	19	447	466
	신성장·원천기술	－	16	16	－	－	－
	국가전략기술	－	8	8	－	－	－
	계	1	72	73	19	447	466

자료: 한국철강협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(2) 추계방법

□ (향후 철강분야의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세액공제 전망치) 2024년 공제 실적에 2025년은 R&D 세액공제 총액(잠정치) 증가율을, 2026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 전망(2024.10.)에 따라 향후 공제액이 변동할 것으로 가정하여 전망

-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의 시차(1년)를 고려하여 t년의 공제액은 t-1년의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률에 따라 변동

[표 4] 철강 분야 R&D 세액공제액(신성장·원천기술) 전망

(단위: 억원, %)

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철강분야 R&D 세액공제액 (신성장·원천기술)	22	23	25	26	27	28
명목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증감 율 전망(t-1)	-	5.0	4.4	4.4	4.1	4.1

주: 설비투자 증감율은 공제의 발생시점과 징수시점 간의 시차를 고려하여 1년전 값을 적용

□ (세수효과) 현행 및 개정안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율의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산출

- 개정안에 따라 철강 분야의 신성장·원천기술 R&D 지출에 대한 공제가 국가 전략기술 수준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가정하여, 현행 및 개정안의 공제율 차이를 비례적으로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
 - R&D 세액공제 공제율(대기업 기준, %): (현행) 20 → (개정안) 30

[표 5] 국가전략기술에 철강분야 추가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치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
현행(A)	25	26	27	28
개정안(B)	37	39	40	42
차이(C=A-B)	-12	-13	-13	-14

(3) 추계결과

-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는 경우, 철강분야에 적용되는 R&D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인상됨에 따라 법인세 등은 2027년 12억원, 2030년 14억원 등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총 53억원(연평균 13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[표 6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법인세 등, 2027~2030년

(단위: 억원)

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 추가 (안 제10조제1항)	-12	-13	-13	-14	-53	-13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